

# 고성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 의안번호 | 955 |
|------|-----|

제출년월일 : 2006. 3. 20.

제 출 자 : 고성군수

## 1. 개정이유

- 주민자치센터를 탄력성 있게 설치하기 위하여 유휴시설을 활용하게 하고, 주민자치위원회의 자치역량 강화와 전문화를 추구하고자 심의기능강화 및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 지방선거제도 개편에 따라 군의원의 고문제도를 개선함과 동시에 위원 등의 임기연장으로 위원회 운영에 있어 영속성을 유지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유휴시설 활용을 위해 “읍면 사무소”규정을 “읍·면”으로 개정(안 제1조, 제2조, 제6조 및 제15조)
- 나. 군수와 읍·면장은 유사기능 단체 등과 연계방안을 강구(안 제7조)
- 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있어 읍·면장이 위원회와 협의하여 처리(안 제7조 및 제11조)
- 라. 선거제도 개편에 따른 군의원의 당연직 고문제도 개선과 이장협의회 회장을 당연직 위원이 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 마. 위원장, 부위원장, 당연직이 아닌 위원 및 고문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고, 위원장, 부위원장의 궐위 및 사고 시를 대비 직무대행 규정을 정함(안 제17조 및 안 제18조의2)
- 바.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안 제21조의2)

## 3. 참고사항

- 가. 입법예고
  - 고성군 공고 제2006-36호(2006.1.16. ~ 2006.2.5.)
  - 의견 제출사항 없음
- 나. 관계법령 :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준칙중개정준칙(2005. 12. .)

## 4. 본문 : 덧붙임과 같음

고성군 조례 제 호

# 고성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고성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를 “고성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을 “「지방자치법」”으로, “읍면사무소”를 “읍·면”으로 한다.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면장이 운영(이하 “자치센터의 운영”이라 한다)한다.

제7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군수와 읍·면장은 관할 구역 내 자치센터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과의 연계방안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

제10조제5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제11조제4항 중 “읍면장”을 “읍·면장”으로, “그 회복을 위해 변상”을 “그 회복을 위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상”으로 한다.

제15조 중 “읍면”을 “읍·면”으로, “읍면사무소”를 “읍·면”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고문은 3인 이내로 둘 수 있으며, 당해 읍·면 관할 선거구에서 선출된 군의원은 당연직 고문, 읍·면 이장협의회 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될 수 있다.

제17조제2항 중 “읍면장은 당해 읍면”을 “읍·면장은 당해 읍·면”으로, “구역내에 거주하거나”를 “구역 내 거주자,”로 하고, 동조동항제1호 중 “읍면”을 “읍·면”으로 하며, 동조제6항 중 “읍면장”을 “읍·면장”으로, “매년도 개시”를 “임기 개시 전”으로 하고, 동조제7항 중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는 1년”을 “당연직이 아닌 위원 및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보좌하며 위원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을 “보좌”로 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직무대행 등) ①위원장이 궐위된 때에는 그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4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한다.

②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위원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④부위원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임시위원장을 선출한다.

제20조제1항 중 “읍면장은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는”을 “읍·면장은 당연직이 아닌 위원 및 고문에게”로 하고, 동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당해 읍면 관할 구역 외에 거주하게 되거나, 관할 구역 내의 사업장을 떠나게 된 경우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분과위원회)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2조제1호·제6조제1항 중 “읍면사무소”를 각각 “읍·면”으로 한다.

제3조제3호·제4조제1항 및 제2항·제5조제2항·제6조제2항 내지 제4항·제7조제2항 및 제4항·제8조제1항·제10조제1항, 제2항, 제3항, 제6항 및 제7항·제11조제5항·제12조제1항 내지 제3항·제14조제1항 및 제2항·제17조제3항 및 제5항·제19조제2항·제21조제1항 및 제5항·제24조 중 “읍면”을 각각 “읍·면”으로 한다.

제23조 중 “고성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고성군위원회 실비변상조례」”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 현   | 개 정 안   |
|---|---|
| <p>제명 : <u>고성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지방자치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에 의거 주민편익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읍면사무소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7조(운영) ①<u>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이하 “자치센터의 운영”이라 한다)은 읍면장이 한다.</u><br/>                 ② 내지 ⑥ (생략)<br/> <u>&lt;신 설&gt;</u></p> <p>제10조 (사용료 등) ① 내지 ④(생략)<br/>                 ⑤군수는 제11조제3항에 의한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br/>                 1. <u>국민기초생활법에 의한 급여의 수급권자</u><br/>                 2. (생략)<br/>                 ⑥ 및 ⑦ (생략)</p> <p>제11조(이용 등) ① 내지 ③(생략)<br/>                 ④읍면장은 주민이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u>그 회복을 위해 변상 또는 이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u><br/>                 ⑤ (생략)</p> <p>제15조(설치) <u>읍면 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결정하기 위하여 읍면사무소에 주민자치위원회를 둔다.</u></p> | <p>제명 : <u>고성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u></p> <p>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br/>                 -----<br/>                 -----<br/> <u>읍면</u>-----<br/>                 -----<br/>                 -----</p> <p>제7조(운영) ①<u>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면장이 운영(이하 “자치센터의 운영”이라 한다)한다.</u><br/>                 ② 내지 ⑥ (현행과 같음)<br/>                 ⑦<u>군수와 읍면장은 관할 구역 내 자치센터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과의 연계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u></p> <p>제10조(사용료 등) ① 내지 ④ (현행과 같음)<br/>                 ⑤-----<br/>                 -----<br/>                 -----</p> <p>1. <u>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u><br/>                 2. (현행과 같음)<br/>                 ⑥ 및 ⑦ (현행과 같음)</p> <p>제11조(이용 등) ① 내지 ③(현행과 같음)<br/>                 ④<u>읍면장</u>-----<br/>                 -----<u>그 회복을 위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상</u>-----<br/>                 ⑤ (현행과 같음)</p> <p>제15조(설치) <u>읍면</u>-----<br/>                 -----<u>읍면</u>-----<br/>                 -----</p> |

## 신·구조문 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17조(구성 등) ①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로 구성하되, 3인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읍면에서 선출된 군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다.</p> <p>②읍면장은 당해 읍면 관할 구역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추천 또는 선출된 후보자 중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자를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p> <p>1. 당해 읍면에 소재하는 각급 학교, 리장대표, 주민자치위원회 및 교육·언론·문화·예술기타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후보자.</p> <p>2. (생략)</p> <p>③ 내지 ⑤ (생략)</p> <p>⑥읍면장은 고문을 포함한 위원 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매년도 개시 1월 이내에 공고·게시 등의 방법에 의해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고문을 포함한 위원을 새로이 위촉한 경우에도 주요 인적사항을 같은 방법에 의해 즉시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p> <p>⑦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p> | <p>제17조(구성 등) ①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고문은 3인 이내로 둘 수 있으며, 당해 읍면 관할 선거구에서 선출된 군의원은 당연직 고문, 읍·면 이장협의회 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될 수 있다.</p> <p>②읍면장은 당해 읍면---구역 내 거주자,<br/>-----<br/>-----<br/>-----<br/>-----</p> <p>1. ---읍면-----<br/>-----<br/>-----</p> <p>2. (현행과 같음)</p> <p>③ 내지 ⑤ (현행과 같음)</p> <p>⑥읍면장-----<br/>-----임기 개시 전-----<br/>-----<br/>-----<br/>-----</p> <p>⑦-----, 당연직이 아닌 위원 및 고문의 임기는 2년-----<br/>-----</p> |

# 신·구조문 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
| <p>제1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생략)</p> <p>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③ 및 ④ (생략)</p> <p>&lt;신설&gt;</p><br><br><br><br><br><br><p>제20조(해촉) ① 읍면장은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4호 내지 제5호의 경우에 한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촉할 수 있다.</p> <p>1. 당해 읍면 관할 구역외에 거주하게 되거나 사업장을 떠나게 된 경우</p> <p>2 내지 5. (생략)</p> <p>② (생략)</p> <p>&lt;신설&gt;</p> | <p>제1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 보좌-----.</p> <p>③ 및 ④ (현행과 같음)</p> <p>제18조의2(직무대행 등) ① 위원장이 궐위된 때에는 그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4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한다.</p> <p>②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p> <p>③ 위원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p> <p>④ 부위원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임시위원장을 선출한다.</p><br><p>제20조(해촉) ① 읍면장은 당연직이 아닌 위원 및 고문에게-----</p> <p>-----</p> <p>-----</p> <p>-----</p> <p>-----</p> <p>1. 당해 읍면 관할 구역 외에 거주하게 되거나, 관할 구역 내의 사업장을 떠나게 된 경우</p> <p>2 내지 5.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br><p>제21조의2(분과위원회)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p> |

## 2006년도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 구 분        |                |    | 기 승인된 재산 |        |         | 금회 승인 요구중인 재산 |          |         | 계   |          |           | 비고 |
|------------|----------------|----|----------|--------|---------|---------------|----------|---------|-----|----------|-----------|----|
|            |                |    | 건수       | 수량     | 금액      | 건수(필지)        | 수량(㎡)    | 금액(천원)  | 건수  | 수량       | 금액        |    |
| 취득         | 계              | 토지 | 1        | 263    | 45,236  | 0             | 0        | 0       | 1   | 263      | 45,236    |    |
|            |                | 건물 | 3        | 408.80 | 750,000 | 1             | 1,389.00 | 730,000 | 4   | 1,797.80 | 1,480,000 |    |
|            |                | 기타 |          |        |         |               |          |         |     |          |           |    |
|            | 1. 매입          | 토지 |          |        |         |               |          |         | 0   | 0        | 0         |    |
|            |                | 건물 |          |        |         |               |          |         |     |          |           |    |
|            |                | 기타 |          |        |         |               |          |         |     |          |           |    |
|            | 2. 교환으로 취득     | 토지 | 1        | 263    | 45,236  |               |          |         | 1   | 263      | 45,236    |    |
|            |                | 건물 |          |        |         |               |          |         |     |          |           |    |
|            | 3. 기타취득 (건물신축) | 토지 |          |        |         |               |          |         |     |          |           |    |
|            |                | 건물 | 3        | 491.30 | 750,000 | 1             | 1,389.00 | 730,000 | 4   | 1,880.30 | 1,480,000 |    |
| 기타         |                |    |          |        |         |               |          |         |     |          |           |    |
| 처분         | 계              | 토지 | 1        | 263    | 45,236  |               |          |         | 1   | 263      | 45,236    |    |
|            |                | 건물 |          |        |         |               |          |         |     |          |           |    |
|            |                | 기타 |          |        |         |               |          |         |     |          |           |    |
|            | 4. 매각          | 토지 |          |        |         |               |          |         |     |          |           |    |
|            |                | 건물 |          |        |         |               |          |         |     |          |           |    |
|            |                | 기타 |          |        |         |               |          |         |     |          |           |    |
| 5. 양여      | 토지             | -  | -        | -      | -       | -             | -        | -       | -   | -        |           |    |
|            | 건물             | -  | -        | -      | -       | -             | -        | -       | -   | -        |           |    |
|            |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6. 교환으로 처분 | 토지             | 1  | 263      | 45,236 |         |               |          | 1       | 263 | 45,236   |           |    |
|            | 건물             | -  | -        | -      | -       | -             | -        | -       | -   | -        |           |    |
|            |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사용 및 대부허가  | 토지             |    |          |        |         |               |          | -       | -   | -        |           |    |
|            | 건물             |    |          |        |         |               |          | -       | -   | -        |           |    |
|            |                | 기타 | -        | -      | -       | -             | -        | -       | -   | -        |           |    |

## 2006년도 공유재산 취득대상 재산목록(건물취득)

(단위: ㎡, 천원)

| 연도<br>구분 | 재 산 표 시 |              |          | 추정가액<br>(설계예산액) | 취득<br>시기    | 취득사유               | 재산소유자 주소.성명         | 비고             |
|----------|---------|--------------|----------|-----------------|-------------|--------------------|---------------------|----------------|
|          | 구분      | 소 재 지        | 수량(면적)   |                 |             |                    |                     |                |
| 계        |         |              | 1,389.00 | 730,000         |             |                    |                     |                |
| 1        | 건물      | 개천면 청광리 693외 | 1,389.00 | 730,000         | 2006<br>상반기 | 축산분뇨 자원화<br>시스템 구축 | 고성군 고성읍 성내리 198 고성군 | 농업<br>기술<br>센터 |